

	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	5-1-32	
		제정일		2013. 01. 01.	
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페이지	1/3	관리 부서	학생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대학의 총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학생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,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, 성폭력 방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- ①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중재에 관한 사항
- ② 가해자 징계요구 또는 발의에 관한 사항
- 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에 관한 대책과 현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②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7조(징계 및 조치) ① 총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,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② 성희롱,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,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.

- ③ 성희롱, 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.

	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5-1-32		
		제정일	2013. 01. 01.		
		개정일	2020. 11. 01.		
		페이지	2/3	관리 부서	학생처

④ 징계 등 제제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.

제8조(시행세칙)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비밀의 준수 및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) 위원 및 협조자, 협조기관은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단, 공공기관의 요청 시에는 무기명으로 제공할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규정	문서번호		5-1-32	
		제정일		2013. 01. 01.	
		개정일		2020. 11. 01.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학생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